

고 시

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26-11호

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
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9월 28일
전남지방우정청장

□ 별정우체국 지정해지

○ 지정해지 내역

별 정 우체국명	총 괄 우체국명	별정우체국 위치	지정해지 사유
광주평동	광주광산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로 799	피지정인의 지정해지 신청

○ 지정해지 일자: 2027. 1. 1.자